

#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이선주 의원 등 7명(황국주, 김장관, 도하석, 장호섭, 박종길, 박정환)
- 발의일자: 2023. 9. 1.
- 회부일자: 2023. 9. 1.
- 상정 및 의결: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3. 9. 15.)

## 2.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달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7조의2, 제12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9. 1. ~ 9. 11.): 의견없음

##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김병욱)

-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임.
-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우리구의 시책 수립·시행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